

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호치민 원 교직원복리후생규정

2019.08.01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호치민 원 (이하 “본원”라 한다)에 소속된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원에 소속된 시간강사와 부 전임강사 및 전임강사와 주임강사,직원(이하“교직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자기계발지원비) ① 본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별표1의 지급 기준에 따라 자기계발지원비를 교직원 1인당 5,000,000 VND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자기계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지원금 신청서 <별지 제1호> 2. 1호의 신청금액에 따른 증빙서류

제4조(건강검진 지원)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현물식사 제공) ① 현물 식사를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.

단. 현물 식사는 중식과 석식에 한한다.

② 석식의 경우 오후 6시에 이후 퇴근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6조(기념품의 제공) ① 명절, 개교기념일, 기타 특정일에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별표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장기근속 기념 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활동비 지원) 교직원이 학생들과 함께 친목, 언어교육확장 및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수혜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복리후생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7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당해 연도 징계를 받은 교직원 2. 당해 연도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

② 교직원이 부당하게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,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]

자기계발지원비 기준표

자기계발지원비	- 본인 수강료, 학비, 도서 구입비, 체력단련비, 각종 학술대회 관련 경비 및 기타 자기계발목적에 부합하는 물품 구입비
---------	---

별표 2]

장기 근속 기념품 지급 기준표

근무 연수	지급기준
1년 이상	기념품 제작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[1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결근이 없어야 하며 강의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신망을 얻은 자이어야 한다.]

별표 3]

지원금 신청서

성명	
직급	
신청 금액	
신청 사유	

위와 같이 자기계발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